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S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2-782-0367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고정은 실장 담당자: 이해영 과장 e-mail: hyoung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7-281호

시행일자: 2026.7.8.

수신자: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4940호(2026.7.8.) 관련입니다.

3. 「화장품법」 개정(법률 제21302호, 2025. 12. 30.* 공포 및 법률 제21604호, 2026. 4. 28. 공포*)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외대상,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 법률 위임·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두고 소분·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범위 및 교육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며,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

*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,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개정(법률 제21302호, 2025. 12. 30. 공포)

**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개정(법률 제21604호, 2026. 4. 28. 공포)

4.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23일(수)까지 우리협회(이메일 : hyoung@kcia.or.kr, 02-782-0367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: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.

붙임2: 검토서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